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의 안 번 호	2148
------------	------

제출년월일 : 2011. 08. 16.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개정이유

- 2010.12.13.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조례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5호 개정에 따라 대수선 중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건축소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함. (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3항제1호)

나.안전관리예치금은 사용승인예정일 보다 3년을 가산한 금액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공사중단 사례가 없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용승인 예정일 까지 완화 하는 것으로 단서 신설.(안 제17조제2항제2호)

다.보전녹지지역에서 조경 설치가 의무사항 이였으나 녹지지역에서는 조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2010.12.13.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1항1호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전녹지 지역에서 조경 하지 아니하도록 삭제.(안 제25조제1항제4호 삭제)

라.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제4항 규정 개정에 따라 복합용도일 경우 전체연면적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개정.(안 제26조제5항)

마.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4조제8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안산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2011. 1. 15.) 시행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게 친환경인증 심사 수수료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26조의2 신설)

바.대지안의 공지 중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밖에 건축물”로 문안을 수정 보완.(안 제29조 별표 3)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정비.

개정조례안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건축법 제13조, 제42조, 제58조, 제65조
-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27조, 제27조의2, 제80조의2 [별표 2]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43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30백만원

- 산출근거 : $15,000,000 \times 2\text{건} = 30,000,000$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 : '01. 6. 3 ~ 6. 24(22일간)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방침결정문
- 현행조례(전문)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심화되지”를 “심화하지”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미 달되는”을 “미달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용도변경의 경우에는”을 “용도변경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 제3항제1호 중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을 각각 “안 건축물의 건축 및 대 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으로 하며, 제8조제1 항제4호 중 “등에서 심의를 하도록”을 “등에서 심의하도록”으로 하고, 제9조 제4항 중 “출석시켜 설명을 하게”를 “출석시켜 설명하게”로 하며, 제13조 제1호 중 “스스로가”를 “자신이”로 하고, 제21조 중 “공사감리를 실시하고”를 “공사감리를 하고”로, “검사를 실시하지”를 “검사를 하지”로 하며, 제25 조 제1항 중 “대지에 건축을 하는”을 “대지에 건축하는”으로 하고, 제26조제 6항 중 “주민들을”을 “주민을”로 하며, 제31조제2항 중 “적용함에 있어서”를 “적용하면서”로 하고, 제32조제6항 중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을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사용승인 예 정일까지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5항 중 “건축물에 대하여는”을 “건축물(복합 용도의 경우 연면적의 합 계로 한다)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 ①시장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친환

경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 심사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인증에 대한 심사수수료는 본 인증 심사수수료와 일괄 지급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건축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건축과장 김 경환
	담당·팀장 직위·성명	주택관리담당 이 정희
	담당자 성명·전화	정진식 (행정 2915)

[별표 3]

대지안의 공지(제29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미터 이상
라. 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 3미터 - 연립주택 : 2미터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그밖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미터 이상
라. 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그밖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미터 이상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p> <p>① (생략)</p> <p>1. 기존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u>심화</u>되지 아니한 범위 이내)</p> <p>2. (생략)</p> <p>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28조에서 정하는 분할제한면적에 <u>미달되는</u>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p> <p>4. (생략)</p> <p>②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와 다세대전환 및 <u>용도변경의 경우에는</u> 제29조(대지 안의 공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p> <p>① (현행과 같음)</p> <p>1. ----- -----<u>심화</u> <u>하지</u>-----</p> <p>2. (현행과 같음)</p> <p>3. ----- ----- -----<u>미달하는</u> ----- -----</p> <p>4. (현행과 같음)</p> <p>② ----- ----- -----<u>용도</u> <u>변경은</u>----- -----.</p>
<p>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u>통할한다.</u></p> <p>② (생략)</p>	<p>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u>총괄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기능) ① (생략)</p> <p>1. 미관지구 <u>안의</u>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다만, 경관위원회와 공동심의한 공동건축물 및 외장의 변경이 없는 대수선의 경우는 제외한다).</p>	<p>제8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1. -----<u>안</u>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 -----.</p>

현 행	개 정 안
<p>2. ~3. (생략)</p> <p>4.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p> <p>②~④ (생략)</p>	<p>2.~3. (현행과 같음)</p> <p>4. -----등에서 심의 하도록----- -----.</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회의) ① ~③ (생략)</p> <p>④ 위원장은 해당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제9조(회의) ① ~③ (현행과 같음)</p> <p>④ ----- -----출석시켜 설명 하게-----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1조(소위원회) ① ~ ③ (생략)</p> <p>1. 제8조제1항제1호의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다만,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제외)</p> <p>2.~3. (생략)</p>	<p>제11조(소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1. ----- 안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p> <p>2.~3. (현행과 같음)</p>
<p>제13조(위원의 해촉) (생략)</p> <p>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p> <p>2. ~4. (생략)</p>	<p>제13조(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p> <p>1. --- 자신이 -----. 2. ~4. (현행과 같음)</p>
<p>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p> <p>① ~② (생략)</p> <p>1. (생략)</p> <p>2. 예치금은 착공신고 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3년을 가산한다)로 예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p> <p>3. (생략)</p>	<p>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p> <p>① ~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다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사용승인 예정일 까지로 한다.</p> <p>3.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서 건축사가 <u>공사감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u> <u>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u> 을 위한 <u>검사를 실시하지</u> 아니하고 사용승 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 ---<u>공사감리를 하고</u>----- ----- ---<u>검사를 하지</u>----- -----.</p> <p>1. ~2. (현행과 같음)</p>
<p>제25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200제곱미터 이상의 <u>대지에 건축을</u> <u>하는</u>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면 적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u>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학교, 교정</u> <u>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부터 제3호</u> <u>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u> <u>퍼센트 이상</u></p> <p>② ~ ④ (생략)</p>	<p>제25조(대지의 조경) ① ----- -----<u>대지에 건축</u> <u>하는</u> ----- ----- -----.</p> <p>1. ~ 3. (현행과 같음) <u><삭제></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p> <p>① ~④ (생략)</p> <p>⑤ <u>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u>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 이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1. ~3. (생략)</p> <p>⑥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u>주민들을</u> 위한 판촉활동 및 공연 등 소규모 문화행 사를 위하여 공개공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일수는 연간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인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 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p> <p>① ~④ (현행과 같음)</p> <p>⑤ -----<u>건축물(복합 용도의 경우</u> <u>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에 대해서는</u> ----- -----.</p> <p>1. ~3. (현행과 같음)</p> <p>⑥ -----<u>주민을</u>----- ----- ----- ----- ----- -----.</p>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26조의2(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p> <p>① <u>시장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심사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인증에 대한 심사수수료는 본인증 심사수수료와 일괄 지급 한다.</u></p>
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p>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p> <p>① (생략)</p> <p>1. ~3. (생략)</p> <p>②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 사이에 녹지(도시계획시설인 녹지에 한한다)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 대지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p>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생략)	<p>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1. ~3. (현행과 같음)</p> <p>② ~⑤ (생략)</p>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현행과 같음)	<p>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1. ~3. (현행과 같음)</p> <p>② ~⑤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⑥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u>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로 한다.</u></p>	<p>⑥----- ----- <u>일반주거지역에 있는-----</u> ----- ----- ----- ----- ----- -----.</p>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 대지안의 공지(제29조 관련)</p> <p>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 건축물</th><th>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th></tr> </thead> <tbody> <tr> <td>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td><td>-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td></tr> <tr> <td>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td><td>-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td></tr> <tr> <td>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종교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td><td>-3미터 이상</td></tr> <tr> <td>라. 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이용하는 건축물</td><td>-3미터 이상</td></tr> <tr> <td>마. 공동주택</td><td>-아파트 : 3미터 -연립주택 : 2미터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td></tr> <tr> <td>바.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td><td>-1미터 이상</td></tr> </tbody> </table>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종교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이용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아파트 : 3미터 -연립주택 : 2미터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	-1미터 이상	<p>[별표 3] 대지안의 공지(제29조 관련)</p> <p>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 건축물</th><th>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th></tr> </thead> <tbody> <tr> <td>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td><td>-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td></tr> <tr> <td>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td><td>-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td></tr> <tr> <td>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종교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td><td>-3미터 이상</td></tr> <tr> <td>라. 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이용하는 건축물</td><td>-3미터 이상</td></tr> <tr> <td>마. 공동주택</td><td>-아파트 : 3미터 -연립주택 : 2미터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td></tr> <tr> <td>바. 그밖의 건축물</td><td>-1미터 이상</td></tr> </tbody> </table>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종교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이용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아파트 : 3미터 -연립주택 : 2미터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그밖의 건축물	-1미터 이상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종교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이용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아파트 : 3미터 -연립주택 : 2미터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	-1미터 이상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종교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이용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아파트 : 3미터 -연립주택 : 2미터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그밖의 건축물	-1미터 이상																												

현 행	개 정 안																												
<p>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 건축물</th><th>건축조례에서 정하는건축기준</th></tr> </thead> <tbody> <tr> <td>가.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을 제외한다)</td><td>-1미터 이상</td></tr> <tr> <td>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td></tr> <tr> <td>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td><td>-1.5미터 이상</td></tr> <tr> <td>라. 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td><td>-1.5미터 이상</td></tr> <tr> <td>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td></tr> <tr> <td>바.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td><td>-0.5미터 이상</td></tr> </tbody> </table>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건축기준	가.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	-0.5미터 이상	<p>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 건축물</th><th>건축조례에서 정하는건축기준</th></tr> </thead> <tbody> <tr> <td>가.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을 제외한다)</td><td>-1미터 이상</td></tr> <tr> <td>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td></tr> <tr> <td>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td><td>-1.5미터 이상</td></tr> <tr> <td>라. 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td><td>-1.5미터 이상</td></tr> <tr> <td>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td></tr> <tr> <td>바. 그밖의 건축물</td><td>-0.5미터 이상</td></tr> </tbody> </table>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건축기준	가.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그밖의 건축물	-0.5미터 이상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건축기준																												
가.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	-0.5미터 이상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건축기준																												
가.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그밖의 건축물	-0.5미터 이상																												

안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148
----------	------

제안년월일 : 2011. 11. 9.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친환경인증 심사 수수료는 친환경인증으로 인한 용적률 상향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이중 지원의 성격이 있음.

2. 주 요 골자

- 제26조의2(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 사항에 대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26조의2 삭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제26조의2(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 ①시장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심사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인증에 대한 심사수수료는 본인증 심사수수료와 일괄 지급한다.	<삭 제>